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이수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59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아이수루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기덕, 김성준,
김원태, 김인제, 민병주,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칠성, 봉양순, 송도호,
왕정순, 유정희, 이종태,
임종국, 정준호, 최재란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 다만, 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인문학 실천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인문교육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의 지원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나. 인문교육 진흥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 다. 인문교육 우수사례 발굴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인문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문교육 실시 계획 등의 자료를 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문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프로그램” 을 “프로그램 개발 및”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문교육 수요조사 및 홍보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인문교육 우수사례 발굴) 교육감은 인문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장이 실시하는 인문교육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필요한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8조(인문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인문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p>	<p>제6조(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인문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문교육 실시 계획 등의 자료를 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p> <p>④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문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p> <p>제8조(인문교육 진흥 사업) ①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프로그램 개발 및 ----- -----</p>

4. ~ 6. (생략)

<신설>

7. (생략)

<신설>

<신설>

제10조 (생략)

<신설>

제11조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7. 인문교육 수요조사 및 홍보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인문교육 우수사례 발굴)

교육감은 인문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장이 실시하는 인문교육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필요한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등의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학교 여건, 학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효율적인 인문교육 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의 위탁할 수 있고 우수사례 발굴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정한 것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부서(학생역량·혁신교육과) 확인 결과 2024년부터 인문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계획을 수립·발표¹⁾하여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고, 사무위탁 및 우수사례 발굴·협력체계 구축은 기존의 업무체계 내에서 수행가능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현
추계 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3

e-mail : shibedoge0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AI 시대, 독서·인문학 교육 강화(인문학을 통한 공감력·비판적 사고능력 배양)를 위한 세부 과제로 1. 삶과 연계한 인문학 교육 (철학적 질문 탐구, 문학 작품 해석 등), 2. 함께하는 독서·인문학 네트워크(독서·토론교육 자문관 등) 등을 제시하고 있음